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5년 회원국 농업정책 감독 및 평가 보고서에서 전체 OECD 회원국의 생산자지지(producer support) 수준이 199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농가수입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지지 비중은 1986-88년에 37%에서 2002-04년에 30%로 감소했지만, 지난 7년 전인 1995-97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생산자지지 수준의 변동은 국제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이 국내 시장에 파급되는 효과를 제한하는 국내 정책조치를 반영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농정개혁에 대한 평가는 생산연계 조치로부터 전환된 생산자지지 수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생산비연계 조치로의 변화 추이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다수 회원국들은 여전히 생산 및 무역을 왜곡하고, 국제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생산연계 조치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특정 품목은 지금까지 농정 개혁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연계 보조로부터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정의된 목적이나 수혜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전환한 회원국은 단지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회원국의 정책 운영의 투명성, 구체적 목표지향성, 신축성, 비용최소성 등을 보장하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OECD 회원국의 농업 및 농정에 대한 종합평가와 주요 회원국의 최근 농정변화 및 농업지지 수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OECD 회원국의 종합 농정평가

1.1. OECD 회원국의 농업지지 수준 여전히 높아

2004년 전체 OECD 회원국의 생산자지지 수준은 2,795억 달러(2,26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부표 1>. 백분율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에 따르면, 생산자지지 수준은 농가수입(farm receipts)의 30%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03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구, 하부구조개선, 검역, 유통 및 판촉 등 농업부문의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 2004년 총 농업지지 수준은 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2. 회원국간 농업지지 수준의 차이 심화

회원국별 2002-04년 생산자지지 수준을 살펴볼 때, 호주와 뉴질랜드는 농가수입의 5% 이하인 반면,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은 20%, 터키는 25%에 달하고 있다. 유럽연합(EU)¹의 생산자지지 수준은 3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밖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생산자지지는 약 60%,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국별로 농업지지 수준의 차이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3. 일부 회원국의 생산자지지 감축 등의 농정개혁 노력 미흡

대다수 회원국의 생산자지지 수준은 1986-88년 이후 감소했다. 노르웨이

¹ EU의 생산자지지 수준은 2004년 이후 25개 가맹국을 대상으로 산출함. 생산자지지 추정치 산출 시, 25개 EU 가맹국 가운데 OECD 비회원국인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베니아 등은 EU의 경우 포함된 반면, OECD 전체의 경우는 제외됨.

의 경우 변화가 없는 반면, 터키의 경우는 증가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의 생산자지지 수준은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멕시코와 뉴질랜드의 경우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생산자지지 수준이 높은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의 경우 상당한 감축을 보였다. OECD의 총 농업지지 수준은 1986-88년 GDP의 2.3%에서 2002-04년 1.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터키를 제외한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다.

1.4. 생산자지지 수단의 변화에 상당한 기여

생산물과 생산요소에 연계된 생산 및 무역을 왜곡하는 지지의 비중은 1986-88년 생산자지지의 91%에서 2002-04년 74%로 감소했다. 생산연계 지지의 감소는 생산자와 국경가격 사이의 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체 OECD 회원국의 평균 생산자가격과 국경가격 사이의 격차는 1986-88년 약 60%에서 2002-04년 30%로 감소되었다. 특히 지지의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스위스, EU, 노르웨이 등에서 가격차이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의 대부분은 1990년대 말에 이뤄졌다. 이런 지지형태의 감소는 순응조건에 따른 직접지불을 포함해서 농가수입에 대한 효과를 일부 제한하는 면적, 가축두수, 과거실적에 근거한 직접지불의 증가와 함께 나타났다.

1.5. 품목 간 지지수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개혁은 미흡

1986-88년과 2002-04년 동안 품목 간 지지수준의 차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감소했다. 감소효과는 우리나라, EU, 일본의 경우 가장 작은 반면, 스위스, 캐나다의 경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양고기, 쌀 이외의 곡물부문에서 지지 수준의 감축이 두드러지며, 설탕, 쌀, 우유 등은 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품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6. EU 확대에 따른 생산자지지 감소

기존 15개국으로 구성된 EU(EU-15)는 2004년 5월 1일 OECD 회원국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을 포함해 총 10개국이 늘어난 25개국(EU-25)으로 확대되었다. EU의 확대 이전 EU-25의 역내무역은 이미 증가해왔으며, 확대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U 가맹국이 25개 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지지지와 농업부문 일반서비스에 대한 보조 수준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신생가맹국의 생산자지지는 EU1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EU의 확대에 따라 EU의 생산자지지는 약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1.7. EU 단일직접지불조치(single payment scheme) 이행방법 결정

2003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일환으로써, 대다수 EU-15는 단일직접지불의 이행시기를 2005년으로 결정한 반면,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2006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영국 등은 단일직접지불조치의 생산비연계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선택한 반면, 프랑스는 최소화하기로 선택했다. 대다수 가맹국은 단일직접지불의 기준을 농가수준의 과거실적에 기초하기로 한 반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 등은 농가수준의 과거실적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따르기로 하였다.

몰타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신생가맹국들은 2004년에 모든 농경지를 대상으로 고정된 기준단가를 제공하는 면적기준 단일직접지불조치(single area payment schemes, SAPS)를 실시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키프로스, 몰타, 슬로베니아 등을 제외한 모든 신생가맹국의 농업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SAPS 시행 초기 단계 이후, 신생가맹국들은 지역모델에 기초하여 단일직접지불조치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1.8. 2004년 주목할 만한 직접지불

미국은 곡물가격 침체에 따라 마케팅론(marketing loan)과 경기조정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CCP)을 통한 보조를 상당히 증가시켰다. EU는 올리브유, 휴, 면화, 담배 등을 대상으로 품목연계 직접지불을 2006년부

터 점진적으로 단일직접지불에 반영할 것임을 결정했다(흡의 경우 2005년). 캐나다는 농업소득안정화 프로그램(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programme)을 통해서 다양한 소득지지조치를 대체했으며, 우리나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농가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수 회원국들은 세금을 감축하거나, 연료비용의 상승에 대한 보상으로 보조금을 제공했으며, 대다수 회원국들은 자연재해 등에 대한 긴급직접지불(emergency payment)을 도입했다.

1.9. 생산통제의 점진적 철폐

2004-07년 실시될 스위스의 새로운 농정개혁 일괄법안(AP 2007)은 낙농쿼터의 점진적 철폐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부터 담배쿼터를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쿼터수매를 위한 직접지불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밀크쿼터에 대한 민간거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한편 일본은 설정된 가격이 아닌 입찰(tender)에 의해 결정된 정부수매제와 함께, 신속적인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였다.

1.10. 농업환경 및 식량안보 정책의 개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은 음용수 할당 및 사용을 개선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노르웨이는 농업환경 직접지불을 대상한 효율적 통합체계를 수립했다. EU는 직접지불에 대한 환경순응(Environmental cross-compliance) 요건의 의무화했으며, 일본에서도 이를 도입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농업오염에 대한 세금을 증가시켰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s)이나 가공식품 규정 및 관리를 포함해서 농축산물 생산이력제(traceability system)를 시행했다.

1.11. 무역협정에 따른 농정개혁 가속화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은 2004년에 양자 혹은 지역 무역협정을 시작하거나 추진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협정들은 농업부문을 포함한 반면,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들은 자유화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었다.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무역협상은 2003년 9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2004년에 다시 가속화되었다. 농업부문의 기본골격 (framework)을 수립하는데 진전이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세부사항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양자 및 지역 협상이 일부 정책조정을 촉구할 수 있는 반면, 다자협상의 진전은 농정개혁을 가속화 하는데 더욱 요구될 수 있다. DDA 협상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농업관련 WTO 패널 분쟁사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WTO 패널분쟁은 농정개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패널은 국내보조,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영무역기업, 동식물 검역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이런 패널의 결정은 현재 협상중인 다자간의 약속이나 국내 농정개혁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2. 국별 주요 농정평가

2.1. 미국²

1986-88년 이후 농정개혁의 진전으로 시장지향성이 개선되었다. 생산자 지지 수준은 감소한 반면, 설탕, 우유 등은 시장가격지지를 통해 높은 보조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생산량 및 면적에 기초한 직접지불로부터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과거 면적에 근거한 경기조정직접지불로의 정책 전환이 있었다. 마케팅론과 함께, CCP는 시장신호를 제약하는 등 무역왜곡 효과가 있지만,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유지될 것이다. 특별긴급직접지불(ad hoc emergency payment)은 계획된 직접지불을 보완하여 지속될 것이며, 기존 보험조치에 통합하여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담배쿼터가 철폐됨에

2 미국의 농업은 GDP의 1.5%, 고용의 2%, 수입의 4%, 수출의 7%를 차지함. 8%의 농가가 농경지의 30%, 농업생산액의 70%를 차지함. 농가소득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4% 이상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 미국의 평균 가계소득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임.

따라 시장기능은 작물생산 여부를 결정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직접지불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보상직접지불(compensatory payment) 기간이 10년으로 제약될 것이다. 환경보전안보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은 modest생산과 연계된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농업환경직접지불(agri-environmental payment)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향후 미국은 시장가격상승을 억제하며, 설탕과 낙농 등 주요 분야의 생산연계 직접지불을 축소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4년 미국은 농산물가격이 침체함에 따라 마케팅론과 CCP의 직접지불을 6배나 증가시켰다. CSP를 포함하여, 2002년 농업법(2002 Farm Act)에 따라 수립된 환경 및 농촌개발 법안이 시행되었다. 추가긴급지불과 새로운 무역과 관련된 가격연계 직접지불이 제공되었지만, 의무 원산지표시제(country-of-origin labelling)는 연기되었다. 담배 생산쿼터가 2005년에 철폐됨에 따라 기간이 제한되는 신규 직접지불이 도입될 것이다.

백분율 생산자지지추정치(%PSE)에 의해서 측정된 생산자지지는 1986-88년에 22%에서 2002-04년에 17%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탕이 57%, 우유가 40%, 쌀이 33%, 밀이 30%에 달한다<부표 2>.

시장가격지지, 생산량 및 투입재 기준 직접지불이 PSE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88년에 65%에서 2002-04년에 63%로 감소하였다. 생산자가격은 1986-88년의 국제가격보다 14% 높았으며, 2002-04년보다는 9% 높은 수준이었다. 특정 작물의 생산을 요구하는 면적기준 직접지불이 PSE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88년에 31%에서 2002-04년에 5%로 감소하였다.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현행 농산물가격과 과거 면적에 기초한 CCP와 직접지불은 2002-04년에 PSE의 19%를 차지했다.

국내 농산물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평균 9% 높은 수준이었지만, 백분율 소비자지지추정치(%Consumer Support Estimate, %CSE)는 푸드스탬프(Food Stamp) 등 식품소비 보조에 따라 1986-88년에 3%의 암묵적 과세에서 2002-04년에 6%의 암묵적 보조로 전환되었다. 농업에 제공된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지는 1986-88년에 전체 지지수준의 25%에서 2002-04년에 32%로 증가하였다. 농업에 대한 전체 지지수준은 1986-88년에 GDP의 1.3%에서 2002-04년에 0.9%로 감소하였다.

2.2. 유럽연합(EU)³

EU는 농정개혁을 통해서 1986-88년 이후 지지수준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지향성이 개선되었다. 시장가격지지와 품목대상 직접지불 등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정책수단들이 EU의 농정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품목특정 직접지불을 포함시켜야 할지에 관해 EU 가맹국간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지만, EU는 2005년부터 단일직접지불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생산과 무역 왜곡현상을 더욱 줄여 나갈 것이다.

공동농업정책(CAP)의 보조금조절(modulation) 규정에 따라 농업 및 농촌 개발에 대한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목표지향적인 정책조치의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직접지불 관련 상호준수(cross-compliance)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환경부하를 억제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임을 입증할 수 있지만, 이런 환경부하는 생산연계 지지수단이 감출될 경우 줄어들 수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GM products)의 유통, 표시, 이력 등에 대한 EU의 관리 규정은 EU 가맹국에서 유통되고 생산되는 특정 GM 농산물의 승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3 EU-15의 농업의 비중은 GDP 대비 2%, 고용 대비 3.8%에 달하고 있음. 총 교역에서 농업 및 농식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에 달함. 생산과 구조 측면에서 EU의 농업부문은 상당히 다양하며, 2004년 10개 신생가맹국의 가입과 함께 이런 다양성은 증대됨.

CAP의 행정관리를 단순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개혁에 의해 수립된 직접지불 체계를 관리하고, 순응조건을 감독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우유 및 설탕과 같은 핵심 부문에서의 다자간 시장접근을 개선하며, 보다 목표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지지 수단을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CAP는 2004년 5월 신생가맹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2003년 CAP 개혁의 이행은 2004년에 시작되었고, 단일직접지불 조치는 가맹국별로 2005-07년까지 시행될 과거 면적 및 두수 기준 직접지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홉, 담배, 올리브유 등은 기존 직접지불을 단일 직접지불로 통합하는 동일한 연장선에서 2004년에 개혁되었다.

백분율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1986-88년에 41%에서 2002-04년에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은 34%로 감소했다. EU-25의 %PSE는 국경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3%(EU-15는 34%) 수준으로 감소했다. 품목별로 지지수준은 2-72%의 범위로 분포하는 등 매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SE 대비 시장가격지지, 생산량 기준 지불, 투입재 기준 지불의 비중은 1986-88년에 98%에서 2002-04년에 67%로 감소하였다. 농가수취가격(price received by farmer)은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는 1996-88년에 80% 수준에서 2002-04년에 3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86-88년 이후 시장가격지로부터 2002-04년 PSE 대비 28%를 차지하는 면적 및 두수 기준 직접지불로의 주목할 만한 정책 전환이 있었다. 백분율 소비자지지추정치(%CSE)로 측정된 소비자에 부과된 비용은 1986-88년에 38%에서 2002-04년에 21%로 감소하였다. 농업부문의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지는 1986-88년에 9%에서 2002-04년에 8%로 감소했다. GDP 대비 농업에 대한 총지지 수준은 2002-04년에 1.24%로, 이는 1986-88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수준이다<부표 3, 부표 4>.

2.3. 일본⁴

생산자지지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86-88년 이후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외 가격 차이를 줄이는 노력 없이 쌀에 대한 시장가격지지가 계속 제공될 것이다.

식료, 농업 및 농촌부문 기본계획(Basic Plan for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은 개별 품목 기준에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 지불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에 기초한 조치로부터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한 직접지불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쌀 부문에서 진행 중인 정책개혁은 직접적인 정책의 가격효과를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높은 국경보호 수준으로 인해서 가격을 줄이는 실제 효과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목표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평가에 중점을 둔 농업환경정책의 기본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생산과 연계된 지지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율성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두 개의 중요한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다른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분야별 구조조정을 이룩하면서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지수준을 줄이고, 시장접근을 개선하며, 비용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목표 지향적인 환경, 농촌, 소득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농업부문은 GDP 대비 1.3%, 고용 대비 4.6%를 차지함. 쌀은 농업인구를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품목이며, 가장 큰 보조를 받고 있음. 최대 식량순수입국이며, 소비의 60%를 수입함. 평균 영농규모는 대략 1.6ha에 달함.

2004년 식료, 농업 및 농촌부문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런 새로운 계획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가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별 품목에 기초한 지지를 전체 품목에 기초한 지부로 전환한 것이다. 생산조정제의 도입과 시장질서유지제도(orderly marketing system)의 폐지 등 쌀 정책 개혁이 지속될 것이다.

%PSE에 의해 측정된 생산자 지지는 1986-88년 61%에서 2002-04년 58%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OECD 평균을 두 배나 상회하는 수준이다. 쌀, 밀, 기타 곡물, 우유는 가장 지지수준이 높은 품목이다. 한편 PSE는 품목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부표 5>.

PSE 대비 MPS, 생산량 기준 지부의 비중은 1986-88년과 2002-04년 모두 변화 없이 90% 수준에 달하고 있다. 1986-88년 농가수취가격은 국제가격보다 150%나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2-04년에는 130%로 거의 큰 변화가 없었다.

%CSE로 측정된 소비자부담 비용은 1986-88년 58%에서 2002-04년 51%로 감소하였다. 총지지 대비 농업부문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지는 1986-88년에서 2002-04년 동안 15%에서 20%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농업부문 총지지는 1986-88년 2.3%에서 2002-04년 1.4%로 감소하였다.

2.4. 캐나다⁵

캐나다는 생산자지지 수준을 감축하고, 과거 자격요건이나 소득에 기초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농정개혁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지수준이 1986-88년 수준보다는 낮지만, 지난 10여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5 농업부문은 GDP 대비 2%를 차지하고, 약 32만 4,000명의 고용을 유지하며, 농업생산액의 50%를 수출함. 90년대 중반 곡물 및 유지종자의 수송보조를 철폐한 곡물수출정책에 대한 개혁으로 인해 축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사료곡물의 가격이 인하되었음.

캐나다는 농업을 보다 시장지향적인 부문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에 반해 농가소득 하락, 가뭄 및 광우병(BSE)을 위한 특별기금(ad-hoc funding)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주요 농가소득지지 정책에 대한 개혁은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농가의 소득증대보다는 농가의 소득안정성 유지에 목표를 둔 정책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그 취지가 일부 훼손되었다.

캐나다 국민의 식품안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들 부문의 정책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해 있다. 농업환경 문제를 다루는 연방지출 예산은 소규모 무상지원에서 전국환경영농계획입안(National Environmental Farm Planning, NEFP)과 같은 국가의 법안에 반영토록 조정되었다. 또한 환경조치, 식품안전 시스템의 구축 등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예산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혁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정책목표가 투명해지고, 정책 이행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시장가격지지의 주요 원천인 우유, 계란, 가금육에 대한 공급관리 시스템 등 일부 장기(long-standing) 정책은 이런 개혁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캐나다의 주요 정책사업은 농업정책 기본방향(Agriculture Policy Framework)을 전격 이행하고, 특히 캐나다 농업소득안정화 정책(Canadian Agriculture Income Stabilisation, CAIS)을 도입하는 등 주요 농업지지 조치에 대한 개혁을 수행한 것이었다. 또한 국내 광우병 환자의 회복에 소요되는 재정손실과 쇠고기 수출시장손실을 다루기 위해서 전환기 산업지지정책(Transitional Industry Support Program, TISP)이 도입되었다.

캐나다의 %PSE는 1986-88년에서 2002-04년 동안 1/3 정도 감소하였으며 최근 22% 수준에 달했다. PSE 대비 MPS, 생산량 및 투입재 기준 지불의 비중은 1986-88년에 82%에서 2002-04년에 57%로 감소하였다<부표 6>.

농가수취가격은 국제가격보다 1986-88년에 40%, 2002-04년에 14% 높은 수준이었다. 캐나다의 지지 및 보호정책은 과거 자격요건이나 농가소득에 기초한 지불 등 생산 및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지불이 PSE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 CSE는 1986-88년 22%에서 2002-04년 15%로 감소하였다. TSE 대비 농업부문의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지는 1986-88년 19%에서 2002-04년 24%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농업에 대한 총지지 수준은 1986-88년 1.8%에서 2002-04년 0.8%로 50% 이상 감소하였다.

2.5. 한국⁶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생산자지지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86-88년 이후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가격과 국경가격 사이의 격차가 감소한 반면, 대부분의 지지는 주로 쌀에 대한 시장가격지지를 통해서 꾸준히 제공되었다. 또한 생산과 연계된 직접지불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최근 휴경보상 직접지불(set-aside payment)을 포함한 쌀 정책에 대한 개혁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수입의 확대 요구와 함께, 목표가격을 철폐하라는 요구가 조정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될 것이다.

축산부문에 대한 농업환경직접지불이 도입되는 등 관련 조치의 분야별 적용범위가 확대된 반면, 생산연계 지지 수준이 높을 경우 이 조치의 경제적 효율성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이력제가 실시되었다. 최근 농촌개발 법안의 핵심은 보다 효율적이며,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6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GDP 대비 3.6%, 고용대비 8.8% 수준임. 이는 소규모 영농체계의 노동집약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실질 농업생산액은 2001년 감소했으며, GDP 대비 농산물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0.5%, 2%를 차지함.

최근 양자 및 지역별 무역협정이 추진됨에 따라 특정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특정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높은 지지 수준을 줄이며,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추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환경, 농촌개발, 소득 목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책은 농촌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새로운 법령과 직접지불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축산 농업환경직접지불이 시행되었으며, 축산설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작물보험 조치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쇠고기 부문에서 실험적인 생산이력제가 도입되었다. 주요 쌀 수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쌀 관세화가 유예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4년까지 매년 쌀 수입량이 확대된다.

%PSE에 의해서 측정된 생산자지지는 1986-88년 70%에서 2002-04년 63%로 감소하였지만, 이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두 배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지 수준은 품목별로 상당히 다양하며, 계란이 33%, 쌀이 76%, 유지종자가 89%에 달한다. PSE 대비 시장가격지지의 비중은 1986-88년 99%에서 2002-04년 93%로 하락하였다. 1986-88년 농가수취가격은 국제가격보다 233%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2-04년에 그 차이는 159%로 감소하였다. 면적, 투입재 사용, 농가소득 기준 지불은 각각 PSE 대비 2%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면적 기준 지불은 환경친화적인 영농기법의 준수여부에 따라 지급된다<부표 7>.

%CSE에 의한 소비자부담 비용은 1986-88년 66%에서 2002-04년 60%로 감소하였다. 2002-04년 소비자들은 국제 농산물가격보다 2.5배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다. TSE 대비 농업부문의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중은 1986-88년과 2002-04년 동안 8%에서 13%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총 농업지지 비중은 1986-88년에 9.3%에서 2002-04년에 3.5%로 50% 이상 감소하였다.

부표 1 OECD 회원국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596,509	740,239	652,674	745,549	822,493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72	68	68	68	70
총소비액(농가단위)	559,564	734,768	650,947	750,466	802,890
생산자지지추정치(PSE)	242,867	254,244	226,451	256,752	279,527
시장가격지지(MPS)	188,479	155,836	142,894	157,123	167,492
MPS 대상품목	135,955	106,598	96,882	106,361	116,553
생산량 기준 지불	12,213	11,176	8,657	10,344	14,526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15,833	39,752	33,188	39,200	46,868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515	12,099	10,139	12,770	13,387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20,302	22,572	20,467	23,345	23,903
투입제계약 기준 지불	2,993	9,113	7,789	9,516	10,035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2,250	3,667	3,013	4,253	3,734
기타 지불	281	29	304	201	-418
백분율 PSE(% PSE)	37.00	30.00	31.00	30.00	30.00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1.57	1.29	1.30	1.29	1.28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1.60	1.44	1.44	1.44	1.43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40,946	61,269	55,946	62,028	65,834
연구개발	4,004	6,732	6,105	6,755	7,337
농업학교	764	1,742	1,553	1,727	1,946
검사서비스	1,094	2,357	2,107	2,406	2,559
하부구조	13,467	19,389	17,286	20,018	20,862
유통 및 판촉	12,793	25,121	22,948	25,397	27,017
공공재고비축	6,646	2,127	2,336	2,016	2,028
기타 지불	2,178	3,800	3,609	3,708	4,084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13.4	17.7	18.0	17.8	17.4
소비자지지추정치(CSE)	-172,243	-148,181	-137,611	-154,191	-152,741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188,357	-154,629	-141,450	-156,603	-165,832
기타 소비자이전	-17,478	-26,009	-24,238	-30,357	-23,431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21,697	30,317	27,733	30,641	32,577
초과사료비용	11,895	2,139	344	2,127	3,945
백분율 CSE(% CSE)	-32	-21	-22	-21	-20
소비자 NPC	1.59	1.33	1.34	1.33	1.31
소비자 NAC	1.47	1.27	1.28	1.27	1.25
총지지추정치(TSE)	305,510	345,830	310,130	349,421	377,938
소비자 이전	205,835	180,637	165,688	186,959	189,264
납세자 이전	117,153	191,201	168,679	192,819	212,106
예산수입	-17,478	-26,009	-24,238	-30,357	-23,431
GDP 대비 백분율 TSE	2.33	1.17	1.17	1.18	1.16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45	142	144	147

주: 1986-88년 GDP 대비 TSE의 비중에는 GDP 자료가 없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제외됨.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부표 2 미국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143,469	210,871	193,151	214,023	225,437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69	66	64	67	68
총소비액(농가단위)	134,717	196,556	182,692	200,380	206,594
생산자지지추정치(PSE)	36,390	40,409	39,105	35,618	46,504
시장가격지지(MPS)	14,084	14,272	15,105	11,549	16,162
MPS 대상품목	9,707	9,471	9,671	7,698	11,043
생산량 기준 지불	2,919	4,093	2,141	3,220	6,920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11,313	2,494	4,002	2,095	1,386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0	2,703	1,805	655	5,650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0	5,691	5,292	6,488	5,291
투입제계약 기준 지불	6,526	7,118	6,919	7,212	7,222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637	1,959	2,044	1,943	1,889
기타 지불	912	2,079	1,798	2,456	1,984
백분율 PSE(% PSE)	22	17	18	15	18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1.14	1.09	1.10	1.07	1.11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1.28	1.21	1.22	1.18	1.22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6,152	30,635	26,953	30,803	34,149
연구개발	1,458	2,691	2,609	2,687	2,776
농업학교	-	-	-	-	-
검사서비스	384	779	751	768	819
하부구조	3,945	4,973	4,058	4,895	5,966
유통 및 판촉	9,266	19,769	17,241	20,112	21,955
공공재고비축	0	248	119	167	458
기타 지불	1,098	2,174	2,174	2,174	2,174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25.2	31.6	29.9	33.4	31.4
소비자지지추정치(CSE)	-3,461	9,725	6,814	12,317	10,045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13,735	-14,272	-15,105	-11,549	-16,162
기타 소비자이전	-1,487	-1,931	-2,043	-1,912	-1,837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11,468	25,928	23,962	25,778	28,043
초과사료비용	294	0	0	0	0
백분율 CSE(% CSE)	-3	6	4	7	6
소비자 NPC	1.13	1.09	1.10	1.07	1.10
소비자 NAC	1.03	0.95	0.96	0.93	0.95
총지지추정치(TSE)	64,009	96,972	90,020	92,199	108,696
소비자 이전	15,223	16,203	17,148	13,461	17,998
납세자 이전	50,274	82,700	74,915	80,650	92,534
예산수입	-1,487	-1,931	-2,043	-1,912	-1,837
GDP 대비 백분율 TSE	1.34	0.88	0.86	0.84	0.93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45	142	144	147

주: MPS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기타 곡물, 쌀, 유지종자, 설탕, 우유, 쇠고기, 양고기, 양모, 돼지고기, 가금육 및 계란 등임.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부표 3 EU-25의 농업지지추정치(EU-25)

단위: 백만 유로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211,407	254,056	242,506	242,428	277,235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75	72	73	72	73
총소비액(농가단위)	188,931	251,806	238,004	240,557	276,857
생산자지지추정치(PSE)	92,308	103,050	96,989	104,474	107,686
시장가격지지(MPS)	80,175	56,230	54,478	57,088	57,125
MPS 대상품목	59,903	40,764	39,633	40,991	41,669
생산량 기준 지불	4,524	3,630	3,592	3,562	3,737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2,415	28,715	26,170	29,636	30,339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0	1,188	598	621	2 344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4,525	8,457	7,519	8,586	9,267
투입재계약 기준 지불	643	4,961	4,501	5,084	5,297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0	10	0	0	29
기타 지불	26	-142	130	-104	-452
백분율 PSE(% PSE)	41	34	34	36	33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1.80	1.32	1.31	1.34	1.29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1.71	1.52	1.52	1.56	1.49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9,677	9,493	9,338	8,849	10,292
연구개발	1,063	1,604	1,536	1,545	1,732
농업학교	93	952	843	904	1,108
검사서비스	156	460	442	402	537
하부구조	1,122	2,212	1,888	2,048	2,701
유통 및 판촉	2,430	3,068	3,056	3,017	3,129
공공재고비축	4,776	907	1,424	816	482
기타 지불	38	289	149	115	603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9.1	8.2	8.5	7.5	8.5
소비자지지추정치(CSE)	-69,690	-51,480	-50,033	-52,624	-51,782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80,625	-55,366	-53,296	-56,164	-56,639
기타 소비자이전	-1,517	-1,011	-388	-1,386	-1,259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4,387	3,708	3,645	3,900	3,579
초과사료비용	8,066	1,190	6	1,026	2,537
백분율 CSE(% CSE)	-38	-21	-21	-22	-19
소비자 NPC	1.78	1.29	1.29	1.31	1.26
소비자 NAC	1.61	1.26	1.27	1.29	1.23
총지지추정치(TSE)	106,372	116,251	109,972	117 223	121,557
소비자 이전	82,142	56,377	53,684	57,550	57,898
납세자 이전	25,747	60,884	56,676	61,059	64,919
예산수입	-1,517	-1,011	-388	-1,386	-1,259
GDP 대비 백분율 TSE	2.82	1.24	1.20	1.26	1.20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56	153	156	159

주: 1. MPS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기타곡물, 설탕, 우유,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토마토, 감자, 화훼류, 포도주 등임.

2. 1986-94년은 EU-12, 1995-03년은 EU-15, 2004년은 EU-25를 대상으로 함.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부표 4 EU-15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백만 유로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211,407	245,289	242,506	242,428	250,933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75	72	73	72	72
총소비액(농가단위)	188,931	242,630	238,004	240,557	249,329
생산자지지추정치(PSE)	92,308	100,576	96,989	104,474	100,264
시장가격지지(MPS)	80,175	55,166	54,478	57,088	53,932
MPS 대상품목	59,903	39,890	39,633	40,991	39,045
생산량 기준 지불	4,524	3,565	3,592	3,562	3,540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2,415	28,380	26,170	29,636	29,332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0	609	598	621	608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4,525	8,069	7,519	8,586	8,102
투입재제약 기준 지불	643	4,938	4,501	5,084	5,230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0	0	0	0	0
기타 지불	26	-151	130	-104	-480
백분율 PSE(% PSE)	41	35	34	36	34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1.80	1.32	1.31	1.34	1.31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1.71	1.53	1.52	1.56	1.51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9,677	9,117	9,338	8,849	9,164
연구개발	1,063	1,569	1,536	1,545	1,624
농업학교	93	924	843	904	1,026
검사서비스	156	422	442	402	423
하부구조	1,122	2,105	1,888	2,048	2,379
유통 및 판촉	2,430	3,048	3,056	3,017	3,071
공공재고비축	4,776	907	1,424	816	482
기타 지불	38	141	149	115	159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9.1	8.0	8.5	7.5	8.1
소비자지지추정치(CSE)	-69,690	-50,553	-50,033	-52,624	-49,003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80,625	-54,440	-53,296	-56,164	-53,860
기타 소비자이전	-1,517	-903	-388	-1,386	-935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4,387	3,708	3,645	3,900	3,579
초과사료비용	8,066	1,082	6	1,026	2,214
백분율 CSE(% CSE)	-38	-21	-21	-22	-20
소비자 NPC	1.78	1.30	1.29	1.31	1.28
소비자 NAC	1.61	1.27	1.27	1.29	1.25
총지지추정치(TSE)	106,372	113,401	109,972	117,223	113,007
소비자 이전	82,142	55,343	53,684	57,550	54,795
납세자 이전	25,747	58,960	56,676	61,059	59,146
예산수입	-1,517	-903	-388	-1 386	-935
GDP 대비 백분율 TSE	2.8	1.2	1.2	1.3	1.2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56	153		159

주: 1. MPS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기타곡물, 설탕, 우유,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토마토, 감자, 화훼류, 포도주 등임.

2. 1986-94년은 EU-12, 1995-04년은 EU-15를 대상으로 함.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부표 5 일본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10억 엔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10,936	8,912	8,930	8,901	8,904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69	66	65	65	69
총소비액(농가단위)	13,938	13,325	13,118	13,750	13,107
생산자지지추정치(PSE)	7,155	5,456	5,532	5,553	5,283
시장가격지지(MPS)	6,408	4,915	4,950	5,005	4,789
MPS 대상품목	4,447	3,256	3,220	3,252	3,296
생산량 기준 지불	221	173	185	171	164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0	0	0	0	0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0	24	33	23	17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298	179	195	174	168
투입재제한 기준 지불	228	164	168	179	145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0	0	0	0	0
기타 지불	0	0	0	0	0
백분율 PSE(% PSE)	61	58	58	59	56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2.47	2.27	2.29	2.33	2.20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2.58	2.37	2.39	2.43	2.28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267	1,386	1,413	1,437	1,309
연구개발	46	87	82	84	95
농업학교	29	21	25	24	15
검사서비스	8	9	8	8	10
하부구조	1,008	1,102	1,125	1,150	1,030
유통 및 판촉	22	27	29	29	24
공공재고비축	43	33	34	32	32
기타 지불	110	107	109	110	102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15.1	20.2	20.3	20.6	19.8
소비자지지추정치(CSE)	-8,026	-6,848	-6,836	-7,215	-6,494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6,322	-4,914	-4,949	-5,004	-4,789
기타 소비자이전	-1,700	-1,946	-1,899	-2,222	-1,718
소비자에 대한 납세이전	-16	5	6	4	4
초과사료비용	11	7	6	7	9
백분율 CSE(% CSE)	-58	-51	-52	-52	-50
소비자 NPC	2.36	2.06	2.09	2.11	1.99
소비자 NAC	2.36	2.06	2.09	2.10	1.98
총지지추정치(TSE)	8,407	6,847	6,950	6,994	6,596
소비자 이전	8,022	6,860	6,848	7,226	6,507
납세자 이전	2,085	1,933	2,001	1,990	1,807
예산수입	-1,700	-1,946	-1,899	-2,222	-1,718
GDP 대비 백분율 TSE	2.34	1.37	1.39	1.40	1.30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01	103	101	98

주: MPS 대상품목은 밀, 기타 곡물, 쌀,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사과, 양배추, 오이, 포도, 귤, 배, 시금치, 딸기, 양파 등임.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부표 6 캐나다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18,458	31,118	32,545	29,359	31,450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82	74	75	73	75
총소비액(농가단위)	15,396	23,313	24,272	24,118	21,548
생산자지지추정치(PSE)	8,025	7,816	7,533	8,488	7,428
시장가격지지(MPS)	4,203	3,737	3,696	4,064	3,452
MPS 대상품목	3,457	2,783	2,780	2,984	2,584
생산량 기준 지불	1,262	345	223	428	383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1,247	825	1 212	427	836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0	1 026	923	1 405	751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1,160	402	380	390	436
투입재계약 기준 지불	0	5	0	4	10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0	1,362	1,017	1,533	1,535
기타 지불	153	114	81	236	24
백분율 PSE(% PSE)	36	22	21	25	21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1.40	1.14	1.12	1.16	1.13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1.57	1.29	1.26	1.34	1.27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1,920	2,291	2,296	2,267	2,309
연구개발	332	460	426	478	476
농업학교	277	252	350	193	212
검사서비스	327	617	595	586	670
하부구조	474	439	418	414	484
유통 및 판촉	510	523	507	596	466
공공재고비축	0	0	0	0	0
기타 지불	0	0	0	0	0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19.2	22.6	23.4	20.9	23.7
소비자지지추정치(CSE)	-3,308	-3,514	-3,661	-3,433	-3,448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3,619	-3,338	-3,272	-3,443	-3,298
기타 소비자이전	-41	-217	-388	-111	-150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42	28	0	85	0
초과사료비용	310	12	0	36	0
백분율 CSE(% CSE)	-22	-15	-15	-14	-16
소비자 NPC	1.32	1.18	1.18	1.17	1.19
소비자 NAC	1.28	1.18	1.18	1.17	1.19
총지지추정치(TSE)	9,987	10,135	9,829	10,841	9,736
소비자 이전	3,660	3,554	3,661	3,554	3,448
납세자 이전	6,368	6,798	6,557	7,398	6,439
예산수입	-41	-217	-388	-111	-150
GDP 대비 백분율 TSE	1.78	0.83	0.85	0.89	0.75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141	137	141	146

주: MPS 대상품목은 밀, 옥수수, 기타 곡물, 우유, 유지종자,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등임.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부표 7 한국의 농업지지추정치

단위: 10억 원

	1986-88	2002-04.	2002	2003	2004 (잠정)
총생산액(농가단위)	13,624	32,978	32,147	31,809	34,977
시장가격지지 대상품목의 비중(%)	72	60	61	57	60
총소비액(농가단위)	14,367	42,570	41,571	44,543	41,598
생산자지지추정치(PSE)	9,638	21,826	21,987	20,620	22,872
시장가격지지(MPS)	9,541	20,206	20,479	18,855	21,283
MPS 대상품목	6,854	12,047	12,493	10,830	12,817
생산량 기준 지불	0	0	0	0	0
면적 및 두수 기준 지불	0	502	458	555	494
과거 자격요건 기준 지불	0	3	0	0	10
투입재사용 기준 지불	69	560	621	506	553
투입재제한 기준 지불	0	79	21	103	113
농업총소득 기준 지불	28	475	407	600	419
기타 지불	0	0	0	0	0
백분율 PSE(% PSE)	70	63	65	61	63
생산자 명목보호계수(NPC)	3.33	2.59	2.76	2.46	2.55
생산자 명목지원계수(NAC)	3.39	2.72	2.88	2.59	2.67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845	3,411	3,498	3,784	2,951
연구개발	52	386	420	383	355
농업학교	5	53	51	54	55
검사서비스	21	131	120	131	143
하부구조	374	2,088	2,192	2,450	1,622
유통 및 관측	0	38	40	36	40
공공재고비축	394	714	676	730	735
기타 지불	0	0	0	0	0
총지지추정치 대비 GSSE 비중(%)	8.0	13.4	13.7	15.3	11.4
소비자지지추정치(CSE)	-9,415	-25,444	-26,587	-25,772	-23,973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전	-9,294	-19,981	-20,479	-18,855	-20,609
기타 소비자이전	-180	-5,640	-6,220	-7,200	-3,501
소비자에 대한 납세자이전	59	177	112	283	136
초과사료비용	0	0	0	0	0
백분율 CSE(% CSE)	-66	-60	-64	-58	-58
소비자 NPC	2.93	2.53	2.80	2.41	2.38
소비자 NAC	2.92	2.52	2.79	2.39	2.37
총지지추정치(TSE)	10,542	25,414	25,596	24,687	25,959
소비자 이전	9,474	25,621	26,699	26,056	24,109
납세자 이전	1,248	5,433	5,117	5,832	5,351
예산수입	-180	-5,640	-6,220	-7,200	-3,501
GDP 대비 백분율 TSE	9.26	3.51	3.74	3.42	3.39
GDP 디플레이터(1986-88 = 100)	100	234	230	235	237

주: MPS 대상 품목은 기타 곡물, 마늘, 양배추, 쌀, 유지종자,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계란 등임.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05.

자료: OECD,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05, 2005. 6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